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655
----------	-------

발의연월일 : 2023. 11. 30.

발 의 자 : 정희용·박대수·조수진
구자근·이 용·金炳旭
김영식·장동혁·김상훈
태영호·양금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에 필요한 규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적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양수산생명산업 육성을 명시하고, 정책대상인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는 목적에 산업적 활용을 추가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

보급하도록 함(안 제3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생명공학”을 “해양수산생명공학과 해양수산생명산업”으로 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해양수산생명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양수산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서비스·기술 등의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과 산업적 응용의 촉진에 필요한 조치

제5조제3호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제8조제1항 중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이용·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조사·연구·등재 및 개발”을 “조사·연구·등재·개발 및 산업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존·관리하기”를 “보존·관리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를 “현황과 해양수산생명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u>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 ----- ----- <u>해양수산생명공학과 해양수산생명산업</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해양수산생명산업”이란 <u>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서비스·기술 등의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 ----- -----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
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
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
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
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체계의 구축

<신 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
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
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과
산업적 응용의 촉진에 필요한
조치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

-----.

1.·2. (현행과 같음)

3. -----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해양
수산생명자원이용·관리기본계
획-----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연구·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 11. (생략)

③ ~ ⑧ (생략)

제9조(조사·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생략)

<신설>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조사·연구·등재·개발 및 산업화-----

5. ~ 11.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등재 등) ① -----

----- 보존·관리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
----- 현황과 해양수산생명산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산업 -----

-----.